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77
----------	-------

제출년월일 : 2021. 08.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및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및 정액 지급 등을 반영하여 해당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급대상의 확대 (안 제1조)
- 나. 평가기준(별표)의 신설 (안 제5조)
- 다. 정액 및 차액 지급규정의 신설 (안 제7조)
- 라. 지급정지 사유의 구체적 규정 (안 제9조)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 2)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1. 5. 27. ~ 6. 16. (제출된 의견 없음)
-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3)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 4)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 5) 제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21.06.29.)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장의 자녀 중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나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장학생은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생(단, 무상교육 대상자가 아니어야 한다)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 재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유공장학생은”을 “유공장학생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특기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를 “특기장학생 :”으로, “뛰어난 자”를 “뛰어난 통장의 자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장학생은 통장 1명에 대하여 자녀 1명으로 한정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장 자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이하 “국가 등”으로 한

다)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장학생 선정) 구청장은 매학기 동장이 추천한 통장자녀에 대하여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순위를 조정하여 장학생으로 선정한다.

제6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범위내에서 인원은”을 “범위에서 장학생 정원을”로 한다.

장학생 정원은 통장 정원의 1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장학금)”을 “(장학금 지급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이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액은 납부한 수업료 및 등록금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학기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이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본문 중 “개시후 30일”을 “개시 후 50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5.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일부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장학생 선발 평가기준(제5조 관련)**

1. 총점 배분

계	통장 경력	학업성적 또는 특기	소득 수준	다자녀 여부	장학생 최초 선발 여부
100	30	30	30	5	5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통장 경력

근속연수	6년 이상	5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점 수	30	25	20	15	10

나. 통장자녀 학업성적(직전 학기) 또는 특기(직전 학기, 상위 훈격 1개만 인정)

학업 성적 분야	고등 학생	5등급 이내 과목 수 / 전체 과목(등급 산정된) 수			
		70% 이상	60% 이상 70% 미만	50% 이상 60% 미만	40% 이상 50% 미만
	대학생	전 과목 평점평균의 백분율 환산			
		상위 30% 이내	상위 30% 초과 40% 이내	상위 40% 초과 50% 이내	상위 50% 초과 60% 이내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		국가대표급, 각종 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	시·도대표급, 시장 또는 시·도교육감 표창 수상자	구 대표급, 구청장 또는 교육장 표창 수상자	학교 대표급, 학교장 표창 수상자
점 수		30	25	20	15

다. 소득 수준 [기준중위소득 기준]

소득비율	0~65%	65~100%	100~150%	150%~
점 수	30	25	20	15

라. 다자녀 여부

자녀 수	3명 이상	3명 미만
점 수	5	0

마. 마포구 통장자녀장학생 최초선발 여부

선발이력	없음	1회 이상
점 수	5	0

3.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소득 수준	학업성적 또는 특기	통장 경력	장학생 최초 선발 여부	다자녀 여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u></p>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통장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u>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u></p> <p>1. <u>유공장학생은 지역발전, 반사회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u></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마포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u></p>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장의 자녀 중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나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u>장학생은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생(단, 무상교육 대상자가 아니어야 한다)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 재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u></p> <p>1. <u>유공장학생 : -----</u> ----- ----- -----</p>

2. 특기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② 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5조(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의하여 순위를 조정한다.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유공 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
2. 생계가 곤란한 통장의 자녀
3. 선행, 모범표창을 수상한 통장의 자녀
4. 장기근속한 통장의 자녀

② 삭 제

2. 특기장학생 : -----

----- 뛰어난 통장의 자녀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장학생은 통장 1명에 대하여 자녀 1명으로 한정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장 자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이하 “국가 등”으로 한다)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5조(장학생 선정) 구청장은 매 학기 동장이 추천한 통장자녀에 대하여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순위를 조정하여 장학생으로 선정한다.

제6조(장학생 정원) 장학생은 서울특별시마포구 통장정원의 10퍼센트 범위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원은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3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등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장학생 정원) 장학생 정원은 통장 정원의 10퍼센트 이하로 한다. -----
----- 범위
에서 장학생 정원을 -----.

제7조(장학금 지급액) ① 구청장이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액은 납부한 수업료 및 등록금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학기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이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
----- 개시 후 50일

-----.

제9조(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② 동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정지) ①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5.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은 경우.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일부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7조(장학금 지급액) :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제출

4. 작성자 :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이승룡 (☎ 3153-8304)